

저널리즘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기본권 보호

이 희 옥*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법학박사(헌법 전공)

■ 국 문 초 록

기술사회의 위험을 인간과 기계의 대립 구도로 접근하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평가 영역을 기계에 내어준다는 점에서 그 대립이 도드라지는 분야이다. 오늘날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AI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축으로 하는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은 뉴스콘텐츠를 작성·제작하는 영역 및 배포·노출 등 제공하는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예측·탐사·분석 보도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그룹핑(grouping)한 맞춤형 뉴스서비스가 있다.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은 콘텐츠 생산과 제공에 효율성을 높인다. 반면 편향된 정보를 기계적으로 제공함에 따라서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수용자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가짜뉴스(fake news) 등을 판별하기 위한 AI를 활용한 필터링은 공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현재 AI는 발전 단계에 있어서 관련 규제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나 AI 활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규율하는 법제화의 방안은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기술의 초기단계에서는 선부른 입법을 보다 관련 기본권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기반 저널리즘의 기본권 간 충돌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의 소극적 부작위에 관

* moma2011@naver.com

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헌법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개념과 보호의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아울러 헌법의 실천적 과제로서 사인 간의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권 보호의무 심사기준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전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정보의 자유로서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확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인공지능(AI), 데이터 저널리즘, 표현의 자유, 가짜뉴스, 필터링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AI 저널리즘의 현황
 - 1. 뉴스 생산·제공에서의 AI 저널리즘
 - 2. 저널리즘의 감시 및 견제에 활용되는 AI
- III. AI 저널리즘과 기본권 침해 문제
 - 1. AI 저널리즘과 이해당사자들의 법적 지위
 - 2. AI 기반 저널리즘과 기본권 침해
- IV. AI 기반 저널리즘에서 기본권 보호 방법
 - 1. AI 저널리즘에서 기본권 보호의무
 - 2. AI 저널리즘에 대응한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
 - 3. 사인 간 기본권 대립과 규범조화적 해석방안
- 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¹⁾을 맞이해 인공지능의 주요기술인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이른바 뉴미디어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²⁾ 뉴미디어의 발전과 다변화된 매체는 이용자 편의성과 참여를 이끌고 있다. 근래에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영역에 일반 이용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오늘날 기술과 매체의 발달은 소셜 저널리즘, 컴퓨팅 저널리즘³⁾ 등

1) 제4차 혁명의 용어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Klaus Schwab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된 이래 국가정책 및 산업, 학계에 두루 인용되고 있다. 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을 제3차인 정보화와 구분했고, 디지털 혁명을 기반한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그 특징이다. Schwab, Klaus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6).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바브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2) 전통적으로 저널리즘은 대중에게 신문과 잡지를 활용해 시사적인 뉴스정보 및 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저널리즘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해 정보 및 오락기능을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했지만, 최근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AI 환경에서는 스마트폰과 온라인뉴스, SNS의 정보콘텐츠 및 유튜브 1인 방송까지 저널리즘에 대한 정의는 위기와 도전이 반복되고 있다.

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저널리즘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저널리즘의 방법론적 정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에서 살펴볼 AI 저널리즘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요소로 저널리즘 행위에서 인간의 행위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의미함을 밝힌다.

본래 저널리즘에서 ‘뉴스’는 저널리스트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최근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저널리즘에 기반한 AI 저널리즘은 뉴스콘텐츠의 생산과 제공에 인간을 대신하게 된다. 방대한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기계가 처리한다는 점에서 AI 저널리즘은 이용자의 편익과 저널리즘의 효율성을 배가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무분별한 데이터의 남용, 편향적 취급 등⁴⁾에서 비롯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⁵⁾ AI 저널리즘은 기계의 학습능력에 의존해 데이터를 수집, 재조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비인격화하고 객체화 대상으로 본다. 즉 수용자와 최종 콘텐츠 간에 기존의 편향을 강화하고 가치평가에 이르는 부분에서 알고리즘에 수용자의 가치 및 정체성을 평가·투사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저널리즘 영역에 발생하는 불법 정보, 명예훼손,

3) 정확성과 신뢰성의 저널리즘의 요소를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수집(Information Gathering), 조직화(Organization) 및 분위기 조성(Sensemaking), 소통과 제안(Communication & Presentation), 뉴스 배포(Dissemination) 및 대중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Public Response) 등 저널리즘의 행위에 컴퓨터를 적용시키는 것(Computing Journalism)을 의미한다. Diakopoulos, Nicholas. (2011. 4) A Functional, Roadmap for Innovation in Computational Journalism, URL: http://www.nickdiakopoulos.com/wp-content/uploads/2007/05/CJ_Whitepaper_Diakopoulos.pdf

4) AI 저널리즘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박진아(2019). 인공지능 저널리즘의 법적 쟁점. <과학기술과 법>, 제1권 제2호, 139.; AI 저널리즘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추이지연동·송승근 (2019). 인공지능 기반 저널리즘의 윤리 쟁점.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23권 제2호, 233-234.

5) 뉴스 제작에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활용됨으로써 편집 인력에 드는 재원을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전환하거나 이용자의 소비성향에 부합되는 범주의 뉴스콘텐츠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점은 AI저널리즘의 장점인 반면, 기존의 환경에서 AI가 학습한 편향과 차별적 요소가 새로운 뉴스콘텐츠에 강화되어 제공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타인의 권리 침해 및 스팸성 정보, 개인정보 위반 등의 위험에 대해서 신문, 방송, 인터넷 각 영역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매우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AI 저널리즘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들이 기존과 다르지 않다면 현행법 내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관련법은 개별 매체 중심의 법률로서 일부 디지털 처리가 있더라도 주로 사람이 주도하는 저널리즘을 규율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다변화된 매체와 기존 기술에 대비한 AI에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AI 저널리즘’에 대한 특별한 문제 영역에서 어떤 기능을 해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구체적으로 AI 저널리즘은 방송과 통신, 인터넷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AI 기술로 대변되는 추천 알고리즘의 경우 특정 이용자가 원치 않거나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음에도 그와 비슷한 연령, 성별, 지역의 다른 이용자의 뉴스콘텐츠 소비성향과 선호와 연결 짓는다. 이는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면서도 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게 된다. 또한 전통적인 언론의 범주에 들지 않은 미디어 매체가 뉴스와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언론 영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 될 수 있다.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이 기술시대의 숙명이라면, ‘정보’의 처리에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기술사회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에서 뉴미디어가 미치는 공론 환경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 최근 특정 매체의 대중화에 따른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에 일련의 법안들이 즉각적으로 제안되기도 하지만, 법률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법 이전에 매체가 갖는 헌법적 의미, 규제 수단의 적합성 등이 폭넓게 고려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저널리즘은 발전 중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편향과 남용, 가짜

뉴스 등의 문제점들은 뉴스를 생성하고 제공(노출 및 배열)하는 생산자의 편에서 선제적으로 자율규제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건대, 저널리즘에서 AI의 활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은 기술의 실현 형태를 살펴보고 입법 이전에 기본권의 구체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헌법 차원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방안을 모색하고, 그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개별법의 과제로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서 II장에서는 AI 활용과 그로부터 유발되는 저널리즘의 법적 문제의 전제가 되는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를 전제로 III장에서는 뉴스콘텐츠 생산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AI 저널리즘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기본권 침해를 문제를 검토한다. 나아가 IV장에서는 헌법상 정보의 자유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본권 보호 방법을 모색하여 V장에서 결론짓고자 한다.

II. AI 저널리즘의 현황

1. 뉴스 생산·제공에서의 AI 저널리즘

저널리즘에서 AI의 주된 기술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다. 일반적으로 AI가 뉴스 생성에 활용되는 과정은 i)데이터의 수집·정제(Data Crawling), ii)빅데이터(텍스트 마이닝, 의미망 분석 등)로 텍스트 분석 기법을 통한 이벤트의 추출(Event Extraction), iii)우선순위화, 기계학습 등 알고리즘의 선별화 작업을 통한 뉴스 소재 탐지(Key Event Detection), iv)뉴스의 주제 및 제목을 확정하고, 논조에 따른 관점 및 분위기를 설정하는 작업(Mood Detection), v) 문장선택과 뉴스를 생성하는 작업(News

Article Generation)으로 이루어진다.⁶⁾

한편 AI 알고리즘의 우선순위화, 연관지음의 기능을 통해 뉴스 콘텐츠를 수용자편에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활용된다. 최근 활용되는 추천서비스의 알고리즘은 수용자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해 다양한 배열과 구성, 편집을 통해 개인화된 뉴스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AI 저널리즘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i), ii)는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컴퓨터를 활용한 보도로, 뉴스 취재와 작성에 컴퓨터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CAR(Computer Assister Reporting)방식에서 출발해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에 기반해 저널리즘의 실행한다는 의미로 그 개념을 형성되었다.⁷⁾ 데이터 저널리즘은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저널리즘에서 컴퓨터를 저널리스트를 보조하는 도구로써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⁸⁾ 몇 년 전 뉴욕 타임스는 디지털 부문에서 이용자 이용행태와 뉴스콘텐츠에 대한 선호도, 지역, 좋아하는 뉴스 등에 관한 데이터를 관리 및 수집해 이용자를 특정 성향으로 특징지어 예측 보도를 시도하였다. 또한 뉴스콘텐츠의 개발과 편집, 플랫폼 유통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도 데이터 저널리즘의 예라고 볼 수 있다.⁹⁾ 뉴스 작성과 편집, 뉴스 제작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공론화 기능과 역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생산, 보관하는 기술로

6) 윤인아(2019). 로봇저널리즘의 이해와 전망. <NIPA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이슈리포트>, 2019-18호, 4.

7) 오세욱(2016). 저널리즘과 알고리즘의 융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3권 제3호 통권 655호, 56-57.

8) 오세욱, 위의 글, 57.

9) 황용석(2018). [디지털 콘텐츠 엑스포 참관기]데이터 중심시대, 저널리즘의 출구. <방송기자>, 제45권, 31-32.

다양한 규모의 데이터가 확보되고,¹⁰⁾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여론조사 및 경제 추이를 분석한 데이터가 뉴스 작성에 활용되는 부분은 저널리즘의 사실성·진실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여론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 알고리즘 저널리즘(Algorithm Journalism)

다음으로 iii)~v)에 해당하는 과정은 알고리즘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단계에서는 빅데이터에 기반해 뉴스를 제작하고 뉴스별로 가중치를 두어 주제별로 클러스팅(Clustering)을 통해 추천, 분류하는 등으로 저널리즘의 전반적인 작업에 알고리즘이 활용된다. 알고리즘 저널리즘에서는 AI 기반 저널리즘의 생산자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널리스트 이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사용해서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뉴스의 배열과 구성에 관여하는 정보통신망사업자, 뉴스서비스제공자도 알고리즘 저널리즘의 당사자가 또는 사용자 책임을 지는 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데이터 저널리즘과 알고리즘 저널리즘 모두 언론의 수익적 측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언론 등의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현재 알고리즘은 특정 저널리즘의 생산을 위한 효율성이 우선시되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큐레이팅·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익적 저널리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로봇 저널리즘(Robot Journalism)

앞서 언급한 데이터 저널리즘과 알고리즘 저널리즘의 개념보다 넓은

¹⁰⁾ M., Coddington (2015). Clarifying journalism's quantitative turn: A typology for evaluating data journalism, computational journalism, and computer-assisted reporting, *Digital Journalism*, 3(3), 334-335.

영역에서 로봇 저널리즘이 있다. 일반적으로 AI와 저널리즘이 결합한 상태를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일컫는데, 뉴스와 보도를 의미하는 합성어인 저널리즘, 즉 뉴스를 만드는 전 과정에 로봇이 데이터를 분류하고 정리해 의미를 도출하고 공중에게 필요한 뉴스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사 요약 AI 채팅 등 콘텐츠 제작 및 협업에 활용되는 것을 포함한다.¹¹⁾ 즉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기능, 이미지나 영상을 분류해서 재조합하는 기능, 센서를 활용한 취재 기능 등이 포함된다. 다만 로봇저널리즘에서 로봇은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한다.

로봇 저널리즘은 저널리스트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취재기능 및 분석기능의 첨단화를 통해 인간을 보조함으로써 공적 관심사의 지평을 넓히고, 저널리즘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자동화(automated)로 인한 저널리즘의 기능이 질적으로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AI의 품질, 대중과의 상호소통, 최종 콘텐츠에 인간 저널리스트의 개입의 통로가 마련됨으로써 AI 저널리즘이 국민의 정보접근성과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저널리즘의 감시 및 견제에 활용되는 AI

가. 가짜뉴스 판별 기능

최근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가 페이스북, 유튜브, SNS 상에서 무차별 유통·확산 되면서 인종·성별·지역 등을 겨냥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 무분별하게

11) 2018. 6. 6. 포르투갈 에스토릴에서 개최된 세계편집인포럼(WEF)에서는 뉴스의 기획, 취재, 편집, 퍼블리싱에 나아가 댓글 관리까지 전반적인 저널리즘에 AI를 도입하는 ‘강화 뉴스룸(Augmented Newsroom)’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소개되었다. 강우규 (2019).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인공지능인문학연구>, 제3권, 128-129.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 등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다.¹²⁾ 이에 독일의 경우 2016년 12월경 가짜뉴스(Falschmeldung)에 대해 5천만 유로(64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 후, 2017년 9월 1일 제정해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유예하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¹³⁾ 그러나 이 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은 가짜뉴스 자체라기보다 인종, 종교, 출신, 성별 등으로 타인을 비하하고 폭력을 선동해 불측의 피해를 일으키는 이른바 불법 정보이다.¹⁴⁾ 이 법은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의무 및 행정재제와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점과 유사한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¹⁵⁾

가짜뉴스는 개인의 계정에 유포되는 스팸메일과 유사한, 일종의 신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에서 뉴스를 가장한 스팸성 콘텐츠이다.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는 AI와 같은 기술적 방법을 통한 기술적 조치가 효과적일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플랫폼상의 게시물 특히 뉴스콘텐츠에 대한 진위 판별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 가짜뉴스 탐지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정보를 데이터와 구글 등에서 제공하는 오픈데이터를 이용해 사실성을 판단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조작된 사진의 이미지의 출처를 찾아서 진위를 판별하고, 통합 검색 비교기능을 제공하는 기능(InVid Tools

12) 민주주의 꽃이라고 일컫는 선거에 SNS가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 예로 2016년 45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2017년 9월의 독일 연방의회 선거를 들 수 있다. URL: <https://www.sozialbank.de/news-events/publikationen/bfs-trendinfo/06-18/bfs-trendinfo-06-18-07>

13) 소위 가짜뉴스가 플랫폼에 유통, 확산되면서 대표적인 SNS 사업자인 'Facebook'의 이름을 따서 페이스북법(Facebook-Gesetz)이라고도 불리는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법집행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은 2017년에 제정되었다.

14) 황태희(2018). 인터넷 게시물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 <법학논문집>, 제42집 제2호, 227.

1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제44조의9 등.

and Service)은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는 가짜뉴스를 통합적으로 탐지하는 것에 특성화된 모듈(Ingenta)이 뉴스미디어에 판매돼 저널리스트들에게 인터넷상 유통되는 정보를 역추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짜뉴스 방지에 활용되고 있다.¹⁶⁾

나. 댓글 필터링

한편 AI는 생성된 뉴스콘텐츠 및 그 댓글에 대한 기술적 조치에도 활용되고 있다.¹⁷⁾ 특히 AI 봇(bot)은 유럽에서 혐오 표현으로 인한 문제와 규제의 일환 플랫폼에서 악성 댓글, 불법 정보를 필터링하는 것에 쓰인다. AI 기반 댓글 관리 기술은 개별 언론사의 게시판의 정책 및 딥러닝 기술을 통해 학습을 통한 결과를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자동관리 프로그램이다. 국내 네이버는 음란물, 스팸, 악성 댓글 필터링에 AI 봇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사람의 수작업을 통한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기술적 자동 관리시스템으로 변형한 것으로서 인터넷상 불법 정보의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오용되는 경우 공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상 유통이 금지된 음란 정보, 명예훼손, 타인의 권리침해 등과 같은 불법 정보에 속하지 않는 정보가 정치적 목적 등에서 부정하게 제한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16) 황용석, 앞의 글, 33.

17) 네이버는 인공지능에 기반해 악성댓글을 차단하는 AI 클린봇을 뉴스댓글에서 방송톡, 네이버 TV 댓글에도 적용을 확대하였다. AI 클린봇 2.5는 욕설 및 과도한 성적표현까지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뉴스 (2021.1.29.). 네이버 악성댓글 차단 인공지능, 과도한 성적 표현도 걸러낸다. URL: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4535&kind=>

Ⅲ. AI 저널리즘과 기본권 침해 문제

1. AI 저널리즘과 이해당사자들의 법적 지위

본 연구에서는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으로 야기되는 기본권 침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대상과 개념을 정하고자 한다.

첫째, AI 기반 저널리즘의 개념과 범위이다. 최근 저널리즘은 지면 신문이나 공중과 텔레비전의 뉴스 방송 이외에도 케이블 방송 등 매체의 다변화를 포함한다. AI 저널리즘은 사실성, 객관성 뉴스의 구성요건 요소를 포함한 언론, 방송, 신문, 뉴스통신, 인터넷 등 관련 법에서 정의한 내용적·형식적 저널리즘의 요건을 갖춘 저널리즘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방법론적 개념이다.

둘째, AI 저널리즘 내지는 저널리스트에게 법인격 인정 여부와 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이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 주체와 제한대상이 특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AI 저널리즘에서는 AI를 활용하는 언론 등을 기본권 향유 주체이자 기본권 제한의 대상으로 보았다. 언론 등은 AI를 활용하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생산자라고 보았다. 한편 AI 기반 저널리즘에서 뉴스콘텐츠의 취재와 작성, 편집에 이른 전 영역을 AI가 도맡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전제에서는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I가 작성하거나 편집한 뉴스콘텐츠의 저작물에 대한 귀속, 특정 콘텐츠로 인한 인격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원인 및 책임 귀속을 AI 봇 또는 사용자로 볼 것인가가 문제 된다. AI의 법인격 문제는 AI의 의사결정을 합리적 인간의 그것으로 보고 의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¹⁸⁾ 과거 컴퓨팅공학자인 앨런 튜

18) 인공지능의 정의에는 이미 약한 인공지능(weak AI)과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분적 개념은 1932년 미국 태생인 언

링은 테스트를 통해 최초로 기계가 인간처럼 계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를 실험하였고,¹⁹⁾ 그 결과 인간이 AI를 대화 상대방으로 두었을 때 AI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 AI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판단하였다. 그의 실험의 전제와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AI에 법인격을 의제적으로 인정할 근거를 찾으려 할 것이다.²⁰⁾ 그러나 현재는 AI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체계에서 그 어떤 결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AI는 인간이 개입하는 수준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AI 저널리즘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생산해 사용하는 자에게 현행법상 소유자 내지는 사용자 지위에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²¹⁾ 예를 들어 AI 저널리스트에게 뉴스 생산을 맡긴 언론의 경우

어철학자 John Searle의 ‘중국어의 방(Chinese room)’의 비유에서 비롯되었는데,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마음(mind)이 있다는 관점에서 ‘강한’ 인공지능의 가설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위 하는 것일 뿐이라며, 강한 인공지능의 사고체계를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인간의 마음과 두뇌의 관계에 빗대는 생각들을 비판하고 있다. Searle, John (1980). Minds, brains, and program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417-425.

- 19) Alan Turing은 1900년 초 영국 수학자이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킹스칼리지에서 그의 논문, “On Computable Numbers, with an Application(1936)”을 통해 튜링머신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후 “Computing machine and intelligence(1950)”에서는 튜링테스트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 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철학적 관점과 법적 관점은 다르다. 기계가 인간과 같은 감정이나 중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인간과 유사한지와 그에 따라 인격체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철학적 관점에서의 문제라면 법에서는 AI의 선택 및 결정에 따른 작위 또는 부작위의 원인을 가려내고 그 책임을 지는 주체를 확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 21) 2017. 2. 유럽연합은 외부로부터의 영향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구현할 수 있는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전자적 인간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그러나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현재 AI의 성능과 수준은 인간과 독립한 완전자율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점, AI에 대한 법인격 문제는 인간의 고유한 지능과 법이 전제하는 합리적 인간관에서의 탈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사용하는 자의 권리와 의무 내에서 법적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독자적인 판단 및 책임 주체인 AI이어야 한다는 AI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양천수 (2018). 현재 지능정보사회와 인격성의 확장, <동북아법연구>.

AI 저널리스트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완전 자율체가 아닌 AI 저널리스트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원인에 언론 등이 예견·불법의 결과에 이르는데 과실이 있다면 AI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언론 등이 AI 저널리스트의 사용자인 경우에도 민법 756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예외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라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언론 등이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라도 뉴스의 형태를 갖춘 콘텐츠를 작성해 배포한 경우라면 생산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AI 저널리즘의 경우 알고리즘을 통해 뉴스를 매개하거나 편집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뉴스서비스 제공자도 AI 기반 저널리즘으로 변형·기여한 부분에서는 사용자에게 준하는 지위에서 책임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²²⁾ 이는 이들이 제공하는 뉴스콘텐츠 등이 AI 기반 저널리즘의 결과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으로부터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는 뉴스콘텐츠의 수용자적 입장으로서는 개인이 있다. 국민인 이용자는 수용자이면

제12권 제1호, 1-26.

- 22)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전통 뉴스미디어 외에도 온라인 미디어가 뉴미디어에 포함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60호, 2018.12.24. 일부개정)에서는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2020.3.24. 일부개정)에서는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업자에 대해서 뉴스매체책임자를 정해 일정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 동법 제2호(정의)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뉴스 생산과 지속적 발행을 하는 것을 말하며(2호),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뉴스를 인터넷으로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뜻한다. 이때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자가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개인)블로그, 인터넷카페,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일부 뉴스는 제외한다. 이러한 법률상의 미디어 생산자적 지위에 최근의 유튜브, SNS상의 뉴스콘텐츠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로서 단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서 공적 표현을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공중에 대한 것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즉 개인은 AI를 활용한 제한조치에서 민주주의 공적 가치를 제한받는 지위에 있다.

2. AI 기반 저널리즘과 기본권 침해

가. 기술사회에서 헌법상 정보기본권의 구조

한편 저널리즘의 수용자로서 개인은 다양한 논조의 뉴스를 접하고 여론의 관심사를 접할 때 국민과 개인으로서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가치판단과 인격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헌법상 정보기본권 내지는 정보 인권으로 개념화하기도 하는바,²³⁾ 기술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높은 권리를 기본권으로 헌법상 인정하는 것은 법정책학에서 개인의 실질적 권리 보호하는 데 토대가 된다. 이하에서는 AI저널리즘과 관계된 정보를 매개로한 기본권을 ‘정보기본권’으로 통칭하고자 한다.²⁴⁾

AI 저널리즘의 정보기본권은 정보의 자유와 보호를 기준하여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정보의 자유로 대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보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발현되는 학문·예술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정보공개청구권, 정보참여권

23) 정보사회의 기본권 논의에서 정보기본권(정보인권)은 헌법의 문화국가원리와 인권의 보장이라는 현행 헌법의 해석으로부터도 도출되지만, 우리사회가 급속히 기술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기본권 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사명을 헌법 규범적으로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수용된 개념으로 보인다. 이민영 (2013),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집문당, 47-55.

24)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정보를 둘러싼 정보 인권 논의에서 헌법상 정보 인권을 공적 성격의 정보와 사적 성격의 정보로 구분한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이인호 (2008),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정보를 둘러싼 권력과 자유의 긴장과 조화. 〈법학연구〉, 제3호, 47.

등이 있다. AI 저널리즘에서는 개인이 뉴스콘텐츠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및 그 정보의 질적 수준(콘텐츠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에 대한 선택권이 방해되는 경우 개인은 언론 등에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²⁵⁾ 그런데 AI가 활용된 저널리즘의 논리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개인이 탐지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가 된다. 구체적으로 AI가 특정 개인을 분류한 카테고리나 범주에 따른 정보의 구분 방식 및 알고리즘으로부터 계정 분리의 적절성, 콘텐츠 제공방식과 지정에의 타당성의 결과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천알고리즘으로 제공된 뉴스콘텐츠의 결과 등에 개입(선택)권의 유무는 개인의 정보기본권 보장에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등 소극적 측면에서의 권리이다. 대다수 언론 등은 뉴스의 제작·편집·배열·노출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고,²⁶⁾ 그 동의에 기반해 맞춤형 뉴스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에의 동의를 득하지 않거나 관련 의무를 해태한 경우가 아닌 한 수용자의 소극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AI 저널리즘에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예측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predictive privacy harm)이다.²⁷⁾ 이

25)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은, 정보화 시대 개인정보에 근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는 다른 기계의 의사결정에 대한 인간존엄 및 적극적 자유에 근거한 보호영역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이희옥 (2020).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140-164.

26)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1호 및 제23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서는 각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개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 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과 같은 민감 정보에 대한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개별적 동의를 거친 경우에 허용하는 사전동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7) 예를 들어 AI 저널리즘에서 수용자의 이용행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정한 성향을 추정해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일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지만, 언급한 대로 생산자가 현행법률에 따라 이행한 경우,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게 된다. 그럼에도 수용자 개인에게는 미래의 적극적 프라이버시에 대

는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콘텐츠가 여타의 검증 없이 전해지고, 무의식중 가치관과 일상의 결정들에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측된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이 개인의 인격 정체성에 밀접한 문제들에 있어서, 정보기본권의 기본권 보장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에서 모두 중요하다. 개별 수용자에게는 사적인 프라이버시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동시에 공적 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콘텐츠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열람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뉴스 생산·제작 측면에서의 정보기본권 침해

앞서 AI가 뉴스콘텐츠 생산자의 측면에서 활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AI의 기반기술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다.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추출하고 뉴스 제작에 활용하는 기술은 전통적인 언론매체가 IT미디어 기업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²⁸⁾ 그런데 여기서 우리 헌법이 정보의 유통에 관한 통제를 국민 개개인에게 ‘정보의 자유’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이로써 개인의 존엄과 자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면서 민주적 정치과정을 확보하려는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 내지는 질서가 위협받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보의 자유를 AI 저널리즘이 통제할 가능성’이며, 또 하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문제’인 것이다.

한 결정에 관한 자유를 침해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데이터분야의 연구자인 Kate Crawford는 이의 해악을 “predictive privacy harm”이라고 한다. Crawford, Kate·Shultz, Jason. Big Data and Due Process: Toward a Framework to Redress Predictive Privacy Harms, *Boston Law Review* 55, 95.

²⁸⁾ 황용석, 앞의 글, 32.: Ulrich Kampffmeyer 박사는 기업의 콘텐츠 관리시스템(ECM)의 개념이 콘텐츠 인텔리전트(Content Intelligence)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한바, 이는 언론사가 IT 기업으로 변모해 이용자가 소비한 콘텐츠 및 댓글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 고객을 분석하는 기술적 도구를 활용하게 됐다는 진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는 AI 저널리즘의 부정적 영향으로 ‘수용자의 정보의 자유를 통제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전통적으로 저널리즘은 국민이 한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 견제하는 창구로 여겨졌다. 뉴미디어 시대 언론사 등은 AI를 뉴스의 편집과 제작에 전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뉴스이용자의 콘텐츠 선호와 가치가 반영된 행태정보를 수집해 개인에 최적화된 추천알고리즘이 적용된 뉴스피드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콘텐츠에 대한 클릭을 유도한 마케팅 목적으로 AI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저널리즘을 통해 확보되어야 할 국민의 알 권리는 AI저널리즘의 가속화로 뉴스콘텐츠의 불평등 내지는 편향으로 인해 침해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IT미디어로 변화한 저널리즘은 소위 필터버블(filter bubble) 현상을 낳음으로써 기존의 정보편향, 정보불평등의 문제를 심화시킨다. 또한 온라인으로 뉴스콘텐츠를 접하는 이용자들에게 특정 범주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의 계정이 진보나 보수와 같이 분리돼 적용된 알고리즘이 동일한 성향의 콘텐츠만을 반복해서 링크해준다면, 개인화 알고리즘은 강화되고 필터버블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²⁹⁾ 이 현상은 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방해하며, 정보를 매개한 알고리즘의 결정이 부지불식간 강요됨으로써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심히 훼손시킬 수 있다. AI 기반 저널리즘은 수용자를 차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개인에 대한 정보와 여론마저도 왜곡시키게 된다. 이에 민주주의의 질서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정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최근 저널리즘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와 이용행태 데이터를 AI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다. 이는 AI 저널리스트가 작성한 기사로 인격권성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와는 구분된다.³⁰⁾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IT미디어

29) 정준영·황소윤·윤영미(2018).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필터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검증.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1권 제3호, 379.

30) 본 논문에서는 AI에 대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AI저

로서 저널리즘이 광고성 뉴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이용자 정보를 이용·투사하는 현상에서 발생하는 사적 영역의 침해를 말한다. 앞서 말한 ‘예측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겠다. 광고에 대해서는 정보접근권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광고를 받지 아니할 권리가 법상 구체화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광고를 제공하는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광고성 정보 수신에 관한 동의를 요구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언론사 등이 제공하는 푸쉬 형태로 제공되는 뉴스를 광고성 수신에 관한 동의를 받는 대상에서 예외로 하였기에, 외형성 정보성 뉴스와 구분되기 어려운 네이티브 광고에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이용자 편에서는 광고와 정보의 혼선에 대한 위험이 있다.³¹⁾ 이 경우 개인정보 내지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율성 침해, 곧 인격 형성이란 측면에서 인격권적 가치를 위협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인은 플랫폼 이용에 앞서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한 뒤 이용행태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상 행적을 남기고 그 처리 결과인 알고리즘의 결정이 반영된 결과를 재투사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 존엄을 훼손한다. 인간이 기계로부터 주체가 아닌 분석 대상으로서 객체화되고 그 결과값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이용행태를 분석해 프로파일링한 결과를 해당 계정 또는 그 계정의 개인과 같은 분류에 있는 이용자에게 투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

널리스트가 작성한 뉴스콘텐츠가 특정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 및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에 따라 AI를 사용한 주체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31) 기사형광고와 같이 소비자가 매체와 광고를 인식하기 어려운 디자인의 형태의 광고를 ‘네이티브 광고’라고도 한다. SNS등 뉴스피드를 통해서 네이티브광고를 노출하는 사업자는 광고와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일정한 형식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희욱 (2018), 네이티브 광고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인하법학>, 제21권 제2호, 108.

다.³²⁾ 또한 기계의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보호 장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의 사전적 동의를 얻음으로써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상 이를 거부할 경우 이용자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즉 한 개인이 자기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처리에 관한 허락과 정보처리 결과 및 용처에 대한 허락(특히 개인정보를 분석한 결과값이 자신에게 다시 투사된다는 점)은 구분은 되고 있지 않다. 아울러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외의 예외에 두 콘텐츠의 성격과 광고를 매개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제한조차 없는 상태이므로 광고에 대한 이용자 권리 또는 소비자 선택권의 보호를 위한 입법상의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다. 가짜뉴스·댓글 필터링과 표현의 자유

최근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상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혐오와 차별을 초래하자, 관련 법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그와 같은 징후가 나타나는 게시물에 대해서 검증하고 위법한 콘텐츠는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³³⁾ 우리나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을 대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³⁴⁾ 한편 선거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

32)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르면, GDPR 제22조와 같이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결과에 대한 설명권 보장과 유사하게 신용정보의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권을 두고 있지만 이용행태 정보는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3)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르면 독일 내 해당 사업자에게 명백히 불법으로 판단되는 혐오 게시물이 신고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가 있고, 불법게시물에는 혐오 및 차별적 발언, 테러 선동, 허위정보, 아동 및 미성년자 포르노, 위험단체의 상징물 등이 포함된다. 이 법에서는 허위 정보(가짜뉴스)가 포함돼 있으나, 온라인상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취지이다.

34) 2020. 6. 9. 일부 개정돼 같은 해 12. 10.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소셜 미디어의 대중화로 부작용으로 아동 등에 대한 범죄와 사회적 불안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삭제 및 접속차단 의무를 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였다.

거운동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해당 게시물의 취급거부·정지·제한 요청을 할 수 있고, 언론사에 대한 실명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³⁵⁾ 한편 위 독일법이 가짜뉴스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유통에 대한 조치의무는 언론사가 아니라 소셜미디어 등 사업자와 콘텐츠를 생성한 자에게 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에서도 가짜뉴스를 생성한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및 민·형사상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유통·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및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의 게재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페이스북, 유튜브, 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를 자발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소위 ‘노란 딱지’는 이들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경우 일정한 표기를 해 꼬리표를 달아 광고를 못 붙이게 하는 등 일정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인터넷플랫폼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게시물에 대해서 이러한 제재를 부과하기란 쉽지가 않고, 이때 AI를 활용해 영상으로 구성된 가짜뉴스나 뉴스형식을 취한 콘텐츠를 감별해 낼 수 있음은 앞서 AI 저널리즘의 현황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한편 AI를 활용한 게시물의 제한조치는 이용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노란딱지를 받은 유튜버는 어떤 이유로 자신의 콘텐츠가 제재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 유튜브 등 사업자는 ‘폭력성, 선정성, 혐오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게시물이 제재 대상임을 언급하였으나,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부쳤다.³⁶⁾ 이와 같은 제한조치는 기준의 모호함 및 제재의 적정성 측면에서

35) 제82조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36) 조선일보, (2019. 11. 9.). 보수 유튜버들, ‘구글 노란 딱지로 표현자유 침해. UR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175.html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가상의 공론장 대한 우리 헌법의 입장은 확인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공간에 대해서 표현의 장이요 민주주의의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라고 설시한 바,³⁷⁾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규제의 정도의 기준은 헌법의 틀 안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위에서 ‘노란딱지’에 대한 구글 등이 제한 규정으로 제시한 폭력성, 선정성, 혐오성의 판단 기준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은 가치 개념일 경우 참여적 저널리즘은 민주적으로 형성되기 어렵다. 이렇듯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은 또 하나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역시 헌법의 틀 안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취해지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뉴스 및 콘텐츠에 대한 댓글을 필터링 등에 AI 저널리즘이 활용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내 네이버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뉴스의 댓글에 욕설이 포함되는 경우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과도한 성적표현으로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AI를 통해서 감지해 해당 댓글 노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네이버가 활용하는 AI 클린봇은 이용자가 설정 옵션을 통해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에 규제기관 등에서 판단 받은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³⁸⁾ 국내 서비스에서 취해지는 AI저널리즘은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 법에서 판단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실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한이 가해지는 대상이 넓혀지고 그 기준이 모호해질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검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렇듯 가짜뉴스와 혐오 등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활용되는 AI

37)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표현 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헌재 2020. 6. 27. 선고 99헌마480, 판례집 14-1, 632.

38) 네이버 스포츠 포스트(2019. 4. 23). [공지] 악플탐지 AI ‘클린봇’을 소개합니다. URL: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388752&memberNo=1156373>

는 ‘자유를 위한 기술인지’ 아니면 ‘통제의 기술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생각건대, AI 저널리즘은 표현의 자유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로 귀결되는 정보의 양을 늘리고 효율적으로 제작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표현을 제재하는 데 활용되는 점은 우려스럽다. 국내외 언론사 및 뉴스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적 절차로서 ‘팩트체크’와 같은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된 기술을 활용하는 등 검증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다.³⁹⁾ 다만 이러한 판별시스템에 공적 기구의 역할 내지는 개입이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AI는 빠른 속도로 인간 저널리스트를 대신하여 수용자(정확히 말하면 ‘저널리즘에 대한 이용자의 경험 데이터’라고 할 것이다.)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이에 검증 절차 및 정정 또한 즉각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아울러 AI는 전래 없는 투명성의 원칙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AI가 표현을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될 때 그 제한의 적정성을 위한 제3자의 개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때 국가 또는 그 기관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반 공중의 의사 형성이 경직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이해관계가 없는 공적 기구가 가짜뉴스와 댓글 필터링 등에 참여하는 것이 대안이 된다. 국내외 기구들은 가짜뉴스를 판별해 걸러내면서 표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기술적 정확성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국외에서 비영리 기관인 ‘전기전자공학자협

39) 뉴스 형식의 허위정보의 확산에 소위 ‘팩트체크’가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국외에는 구글 뉴스가 ‘클레임리뷰 마크업(ClaimReview Markup)’, BBC는 ‘스토리 온톨로지(Storyline Ontology)’가 시도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형식 요건 및 사실을 확인하는데 자동화된 기계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국내에는 ‘SNU 팩트체크’가 시도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팩트체크를 판단하는 형식적 기준이 섬세하지 못하고 언론사의 적극적인 입력 작업에 의존하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세욱·황구현 (2018), ‘팩트’의 형식적 구성 요건에 대한 탐색적 연구; ‘SNU FactCheck’ 베타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언. <언론정보연구>, 제55권 제4호, 74, 89-90.

회(IEEE)'는 뉴스출처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두고, 뉴스에 대한 사실적 정확성을 확인 및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둬으로써 뉴스제공자에 대해서도 6개의 등급을 통해서 점수를 매긴다. 이 기관의 프로젝트는 뉴스제공자의 콘텐츠와 제공, 정책을 평가해 사실에 기반한 뉴스의 정확성, 뉴스 본문과 헤드라인상의 혼선 여부, 편견 여부, 철회 정책, 광고와 뉴스의 구분 여부 등의 측면에서 뉴스제공자와 뉴스의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⁴⁰⁾ 아울러 가짜뉴스 또는 팩트체크를 시도하는 기구에서는 제재를 가하는 콘텐츠의 대상에 대한 기준과 이에 적용되는 AI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의 가중치 등 세부기준에 관한 적정성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알고리즘에 관한 세부기준을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고려하고, 사업자 등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AI 기반 저널리즘에서 기본권 보호 방법

1. AI 저널리즘에서 기본권 보호의무

가. 기본권 보호의무 강화 필요성

AI에 기반한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저널리즘에서도 AI를 규율하는 법정정책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여기에는 AI가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점 이외에도 관련 규제가 각국의 이해와도 맞물려 있는 데 그 이유가 있다.

AI저널리즘은 전통적인 저널리즘이 수행했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정보공개청구권 등으로 대변된 민주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측면이 있다.

⁴⁰⁾ IEEE의 프로젝트 P7011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 참조. IEEE, URL: <https://sagroups.ieee.org/7011/>

그런데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 불법행위,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법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AI 알고리즘의 작업으로 인한 의사결정 및 결과 귀속의 문제를 법적 문제로 다룰만한 헌법적 확인 내지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AI를 활용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내지는 정보기본권의 보호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기술로부터 보호해야 할 개인의 자기결정의 요소인 자유와 자유권적 기본권에 전제하는 가치들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향은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인격정체성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근간이 된다. 아울러 AI 저널리즘의 알고리즘은 개인의 뉴스콘텐츠의 선택권을 방해하고, 불법이 아닌 단지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공적 이익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AI 저널리즘에 대응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질서를 보전을 위한 헌법상의 대응이 요청된다.

나.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전향적 적용

근대 입헌주의에서 개인의 인권이 선언된 이래 헌법상 인간의 자유와 개별 기본권들이 보편화 되었다. 입헌주의에서 기본권의 보호는 국가 역할의 중요한 의무이다. 그런데 과거 서구사회에서 자유방임주의가 중시된 것과 달리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이는 기술사회에서의 기본권 침해가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⁴¹⁾ 예를 들어 AI 저널리즘에서 나타나는 기본권 갈등상황은 사인 간 AI를 활용하는 국민1의 영업의 자유와 그로부

41) 기본권 보호의무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본권 가해자, 제3자의 침해로부터 기본권보호를 요청하는 기본권 보호필요자,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무자인 국가의 3각 관계가 기본이 된다. 방승주 (2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460-161.

터 제한받는 국민2의 결정의 자유가 충돌하면서 나타난다. 이 경우 국가는 국가—국민의 구도에서 취하는 일반적인 기본권 보호 구도에서 탈피하게 되며, 사인 간 이해관계에서 국민1과 국민2가 각자 자기의 기본권 보호를 국가에 요구하는 삼각 구도를 형성된다.⁴⁰⁾ 이때 AI 저널리즘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침해행위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기준을 따져볼 수 있지만, 그와 달리 (추천알고리즘과 같이) 저널리즘의 제공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불충분하다면, 기본권 보호의무와 관련한 국가의 소극적 부작위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²⁾

한편 AI 저널리즘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보호 이행은 보호대상이 되는 기본권의 맞은편에 있는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 또한 위의 예시에서 국민1의 행위가 국민2에 대한 침해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국민1과 국민2 중 어느 한쪽의 기본권만을 완전히 보장할 수만은 없으며, 양자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 심사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적용과 함께 방어권 차원에서의 과잉금지 원칙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과소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1 또는 국민1의 관계에서는 심사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일방의 기본권 제약을 고려하지 못한다. 다만 과잉금지원칙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위가 문제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루는 AI 저널리즘 영역에서(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이어서 기본권 보호에 별다른 기준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적극적 작위의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국가의 개입과 관련한 기본권 보호의무의 심사기준으로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에 대한 관계에서 과소금지원칙이 독자적 심사기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⁴³⁾

42) 헌법재판소는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나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며,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 또는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 삼고 있다.(헌재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판례집 21-1상, 156, 177.)

43) 기본권의 3각 관계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독자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

그럼에도 AI 저널리즘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호는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기본권의 법익도 적정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AI 저널리즘에서 나타난 개인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과 관련한 심사기준으로 이전보다 전향적인 과소금지원칙을 적용하되 제한되는 상대방의 법익 간 이익형량에 과잉금지원칙을 병행함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심사방법의 기준으로서 개인의 정보에 관한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명시되거나 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으로서 확인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AI 저널리즘에 대응한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

가. AI 저널리즘에 대응한 관련 기본권의 보호범위

(1) 정보의 자유의 내용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유력한 자원으로, 정보를 매개로 생산·유통하고 소통하게 되었다. 살피본 바와 같이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에서 AI가 분석과 생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미 수집된 정보데이터이다.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외부와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정보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⁴⁴⁾ 정보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서 확인해왔다. 이하에서는 AI 저널리즘에서 집중되는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하면서, AI 저널리즘에 관계된 정보의 자유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검토하고자 한다.

조하였다. 허완중(2018).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공법연구> 제37권 제1-2호, 206-212.

44) 정중섭(2016). <헌법학원론(제11판)>. 박영사, 671.

첫째, 알 권리이다. 알 권리 역시 헌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인의 모든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서 알 권리는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근거로 표현의 자유인 헌법 제21조를 제시하고 제1조 국민 주권주의, 제10조 인간 존엄,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알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9조에도 명시되었음을 밝혔다.⁴⁵⁾ 이처럼 알 권리를 통해서 수용자는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으로부터 생성된 뉴스콘텐츠의 형성 경로와 적용된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알 권리가 AI에 환경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권리로서 보장되는지에 관한 문제는 일상의 정보생활에서 보호범위가 구체화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닐까 한다.

둘째, 표현의 자유이다. 알 권리 등 정보에 관한 기본권의 기저에는 적극적인 표현의 발로가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간하고 있고, 한 개인이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치실현의 수단으로 보고 존중하고 있다.⁴⁶⁾ 다만 정보의 자유에서 표현의 자유는 표현행위로 발현되는 모든 정보활동의 자유로서 다른 개별기본권을 통해서 해석·적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AI 저널리즘 등 AI가 활용된 분야의 알고리즘의 표현을 표현행위라는 것에 주목해 모두 표현의 자유의 대상으로 보고 그 제한범위를 동일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즉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등의 관계에 있어서 표현행위가 개인의 인격성과 관련되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장래에 어떤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보호 및 제한되는 정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가 개인의 일상사 및 정보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결정적 의미를 갖는지가 구체화

45) 헌재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판례집 3, 247.

46) 헌재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판례집 11-1, 775.

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에서 살펴본 기본권들을 핵심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기본권은 자기결정권이다. 자기결정권 역시 헌법에서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자기결정권은 그 개념 표지상의 포괄적 성격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하지만,⁴⁷⁾ 인간의 자유와 자기결정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현대 기술사회의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보의 자유는 정보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정보 침해적 우려와 위험성에 힘이 실려 개인의 자기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자유로 치중되어 그 내용이 형성되게 되었다. 바로 정보화 시대 발견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상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였지만, ‘개인정보’를 매개로 한 정보화 처리 등에 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하는 권리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주체의 정보에 대한 소극적 자유를 보호하는 가운데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이고 인격권이나 자기결정의 전제가 되는 가치라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논하는 ‘AI 저널리즘’과 연관이 있지만, 가명처리가 되지 않은 ‘개인정보’에 국한된 권리로 개인의 의사결정권이나 AI의 결정에 대한 알고리즘 결과값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는 큰 제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AI 저널리즘에서 수용자인 개인은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위임자로서 헌법상 자기결정 행사의 주체이다. 단정적

47) 김철수(2013),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박영사, 569-574.

으로 표현한다면, 개인은 그가 실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을 위임했는지와 상관없이 인공지능 의사결정으로 인한 종국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개입하거나 거절·선택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의 법질서에서 인정되려면 반드시 헌법의 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⁴⁸⁾

(2) 정보의 자유로서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확정

헌법은 기본권을 통해서 입법(법률)과 사법부의 이행(재판)에 따라, 이라는 단계적인 구조를 통해서 국민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규정에 따라서, 열거되지 않더라도 우리 법체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권리들은 헌법 재판소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해석에 따라 확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AI를 통해서 재창조되는 사회적 시스템이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크고 작은 결정들에 영향을 주고 더욱이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질서에 인위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이 자기결정에 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면, AI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는 입법자의 재량에만 맡겨져야 할 것인가? 개별적인 상황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것은 개별 입법의 목적이다. 정보의 자유 안에는 지능정보화시대의 AI에 대응한 자기 인식에 필요한 자기결정에 필요한 AI의 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기계로부터 주어진 결정에 대한 선택권이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은 향후 법제화에 적용될 이익형량에 기준이 될 수 있는, AI에 대응한 개인의 결정에 관한 핵심적 가치를 담은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48) AI저널리즘에서 수용자는 뉴스콘텐츠의 종국적인 귀속 주체이지만, AI 기술의 복잡성과 언어의 차이 등의 특성으로 콘텐츠의 생성·노출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AI 저널리즘의 경우 AI를 활용하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의 내용이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⁴⁹⁾ AI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 즉 이 기술로부터 수용자에게 주어지는 뉴스콘텐츠의 제공에 관한 정보와 그에 대한 선택권의 근거가 필요하겠다. 아울러 수용자가 관련 정보에 대한 제공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디 자기결정권이 갖는 포괄적 성격인 ‘자율성’을 공통적 개념 표지로 하되, 그 안에 ‘적극적 자유’와 ‘선택과 통제’라는 요소가 헌법상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⁵⁰⁾

3. 사인 간 기본권 대립과 규범조화적 해석방안

AI 기반 저널리즘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사업자의 자유가 대립 구도에 놓이게 된다. 이때 이들 자유의 대립을 이익형량하고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해나가는 것이 헌법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앞서 문제시되는 사안에서 사인 간 정보의 자유와 충돌되는 각자의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가. AI 알고리즘의 표현의 자유 인정 여부

먼저 언론사 및 플랫폼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는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에 의한 검색결과를 의견으로 해당한다고 보아 이 또한 연방 헌법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으로 본 바 있다.⁵¹⁾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사업자의 온라인 표현행

49) 이희옥, 앞의 학위논문, 146-149면.

50) 적극적 자유의 개념은 외부로부터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의 맞은 편에 있는 개념으로서 외부에서 정해놓은 절대적인 요청들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어야 한다. Berlin, Isaiah (1960).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168-169.

위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²⁾ 아울러 창의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업적 광고까지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기도 하지만,⁵³⁾ AI의 알고리즘까지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 보인다. 만일 AI 알고리즘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이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구현 결과가 공공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알고리즘의 수행한 내용이 문학이나 예술에 해당하는 표현인지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뉴스형식의 외형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 콘텐츠가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에 미치는 영향 또는 문화적 활동 및 상업적 목적 등을 따져보아 표현의 자유의 대상 인정 여부 및 정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업자의 AI 필터링으로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

다음으로 AI기반 기술을 활용한 언론사 및 뉴스서비스제공자 등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의 정반대편에 있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랫폼에 콘텐츠를 남기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판별, 댓글 필터링 등 모니터링과 같은 사업자의 조치로부터 제한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구글 및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의 경

51) 오를라호마 법원은 구글(Google)의 알고리즘에 의한 검색결과로 나타난 페이지랭크가 의견에 해당하므로 연방 헌법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Search King Inc. v. Google Tech Inc.(W.D. Okla, May. 27, 2003); 마찬가지로 뉴욕법원은 바이두(Baidu)의 검색 알고리즘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Kinderstart.com, LLC v. Google, Inc. Case No. C 06-2057 JF (RS), (N.D. Ca., March 16, 2007), 그러나 모든 검색 알고리즘이 표현의 자유로 강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는 인격권 내지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알고리즘을 통한 단순전달(mere conveyance)이라는 Google 등 사업자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52)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53) 현재 2019. 5. 30. 선고 2019헌가4, 공보 제272호[전원재판부], 636.

우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이용자의 콘텐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론 국내 사업자도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서 법률 및 약관에 명시적이고 공정한 규정을 통해 제한조치를 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히 침해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상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점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확인해준 바와 같이,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활동이 참여적 대중매체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다.⁵⁴⁾ 그런데 가짜뉴스 및 댓글 필터링과 같은 사업자의 임의적인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제한조치는 1인 매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냉각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한다. 그리고 AI를 수단으로한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등의 문제는 AI 알고리즘의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심각한 인터넷 공간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

다. 충돌되는 자유의 중요도에 따른 이익조정

AI 저널리즘으로 발생하는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초래되는 당사자 간 기본권 충돌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헌법 체계에서 기본권 충돌 문제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방법이 고려된다.⁵⁵⁾ 먼저, 충돌하는 기본권 이익형량을 통하여 서열화된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상충되는 기본권의 보호이익이 제한 정도를 최소화하여 양 기본권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최후 수단을 억제하는 등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을 통해서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AI저널리즘으로 인한 기본권 충돌 문제에서는 동일한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보호범위를 어떻게 볼 것

⁵⁴⁾ 헌재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판례집 14-1, 632.

⁵⁵⁾ 정중섭, 앞의 교과서, 355-356.

이며, 어떤 기준으로 이익형량을 할 것인가이다. 특히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의 문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공적이익, 그리고 반대편에의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가 대립하면서 다양한 현실적인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유’라는 공통의 기본권을 두고, 기본권을 서열을 적용하는 경우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어떤 경우 AI 활용이 인간의 존엄성, 인격권 내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사업자의 자유에 우선할 것이고, 헌법 이후 법정정책적 제도가 마련될 때 AI 저널리즘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사업자의 영업(표현)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사업자의 AI가 적용 정보제공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수정·선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의 자유가 대립된 경우에는 공적이익의 중요도 따른 보호 필요 정도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치적·시민적 의사표현에 관한 콘텐츠인지 여부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따라서 이는 사전적 행정규제 또는 입법화를 통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법에서 확인되지 않은 AI로 인한 저널리즘의 제한이 정당화되려면 그 목적이나 수단이 공적 이익에 양보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뉴스 콘텐츠와 분리된 영역에서 이뤄지는 공간, 즉 사업자가 자신의 자본으로 설비를 투자해 영업활동을 하는 영역 내에서 AI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자체적인 규율이 우선될 수 있을 것이고, 정보적 뉴스 콘텐츠가 주된 기능인 영역에서는 공적 이익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V. 나오는 말

AI 보편화를 앞두고 방법론적 개념에서 AI저널리즘의 보편화와 언론 및 플랫폼사업자의 콘텐츠 규제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현행법률상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개별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생산·유통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추천알고리즘으로 인한 개인의 정보기본권 침해 등 AI 저널리즘으로 인한 부작용, 가짜뉴스 및 외형상 뉴스 형식을 갖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언론사 및 뉴스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자발적 자율규제에 나선 상태이다. 그러나 자율규제 역시 공적이익에 대한 이익형량이나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인 간의 기본권 갈등상황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국가의 소극적 부작위 여부를 판단하는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사회의 속도와 환경에 법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를 입법자나 집행자의 재량권에만 맡기는 것으로는 개인의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자와 보호자 간의 관계의 규율 및 국가의 적극적 행위에 대한 기본권 제한 문제를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하되, 입법의 재량에 남겨진 법정책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바로 기본권의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전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AI 저널리즘으로 발생하는 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현상을 헌법적 틀 안에서 비교형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 필요하다. 근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정보에 습득과 활용, 통제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외에도 정보생활에 있어서 적극적 자유와 표현, AI 실행결과에 대한 거절, 선택권이 포함된 자기결정에 관한 내용이 개념표지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김철수 (2013). 〈헌법학신론 (제21전정신판)〉, 박영사.

이민영 (2013).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집문당.

정종섭 (2016). 〈헌법학원론 (제11판)〉, 박영사.

Schwab, Klaus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6).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논문〉

박진아 (2019). 인공지능 저널리즘의 법적 쟁점. 〈과학기술과 법〉, 제1권
제2호.

양천수 (2018). 현재 지능정보사회와 인격성의 확장, 〈동북아법연구〉, 제12
권 제1호, 1-26.

오세욱 (2016). 저널리즘과 알고리즘의 융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버커
뮤니케이션학보〉, 제33권 제3호 통권 655호.

오세욱·황구현 (2018). ‘팩트’의 형식적 구성 요건에 대한 탐색적 연구;
‘SNU FactCheck’ 베타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언. 〈언론정보연구〉, 제
55권 제4호, 74.

윤인아 (2019). 로봇저널리즘의 이해와 전망. 〈NIPA 제4차 산업혁명과 소
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019-18호, 4.

이인호 (2008).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정보를 둘러싼 권력과 자유의 긴장과 조화. 〈법학연구〉, 제3
호.

이희옥(2018). 네이티브 광고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인하법학〉,
제21권 제2호.

_____(2020).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관한 연
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정준영·황소윤·윤영미 (2018).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필터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검증.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1권 제3호.

추이지엔동·송승근 (2019). 인공지능 기반 저널리즘의 윤리 쟁점. 〈한국정

- 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23권 제2호.
- 허완중 (2018).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공법연구> 제37권 제1-2호.
- 황용석 (2018). [디지털 콘텐츠 엑스포 참관기]데이터 중심시대, 저널리즘의 출구. <방송기자>, 제45권.
- 황태희(2018). 인터넷 게시물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 <법학논문집>, 제42집 제2호.

2. 국외문헌

- M., Coddington (2015). Clarifying journalism's quantitative turn:A typology for evaluating data journalism, computational journalism, and computer-assisted reporting. *Digital Journalism*, 3(3).
- Berlin, Isaiah (1960).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 Searle, John (1980). Minds, brains, and program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 Crawford, Kate·Shultz, Jason (2014). Big Data and Due Process: Toward a Framework to Redress Predictive Privacy Harms. *Boston Law Review* 55.

■ ABSTRACT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n Journalism

Lee, Heui Ok

Ph.D in Law(Major in Constitutional Law),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When approaching a technological society's risks from a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humans and machines, journalis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an area where confrontation gives away the unique areas of human valuation to machines. Nowadays, AI use in journalism is being attempted. Such journalism based on AI, which is subsequently based on big data and algorithms, is accessed in areas where news content is written and produced and where news is distributed (arrayed) and exposed.

Some examples of the former include forecasting, exploration, and analysis reporting through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anwhile, customized news services that group user data into mechanical algorithms are an example of the latter. Fears surrounding AI-based journalism stems from bringing utility to content production and delivery while threatening inmates' privacy and violating their fundamental rights by providing biased information mechanically. In addition, filtering using AI to identify fake news in journalism can excessively dampen the freedom of public expression. Currently, preparing regulations related to AI development is difficult because

legislation designed to regulate problems caused by AI utilization is an area where research is continuously needed. In the early stages, details on specific fundamental rights need to be confirmed in the constitution before legislation can be drafted. In addition, constitutional efforts are needed to strengthen screening standards on the side effects before creating a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fundamental rights and AI-based journalism.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problems arising from AI-based journalism, especially on the concept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proposes the p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Underprotective Prohibition as Judicial Review Standard Principle to resolve conflicts involving fundamental rights between signatories. This proposal also requires establishing a scope of protection for self-determination as freedom of information.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AI), data journalism, freedom of expression, fake news, filtering

[논문투고일 2021. 3. 14. 논문수정일 2021. 4. 7. 게재확정일 2021. 4. 8.]